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상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819 발의연월일: 2024. 8. 13.

발 의 자:이상식·이병진·김문수

서미화・양부남・임호선

임미애 • 이건태 • 윤준병

김동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공사 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,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.

그러나 공공성이 중시되는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도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 공무원 수준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60조).

법률 제 호
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0조의 제목 중 "임원"을 "임직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"없다"를 "없으며,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2항"을 "제2항 및 제3항"으로, "임원"을 "임직원"으로 한다.

③ 공사의 직원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직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공사의 직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6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0조(<u>임원</u> 의 결격사유) ① 다음	제60조(<u>임직원</u> 의 결격사유) ①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	
<u>없다</u> .	없으며, 제3호에 해당하는
	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
	<u>없다</u> 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공사의 직원이 제1항제3호
	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
	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
	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
<u>③</u> <u>제2항</u> 에 따라 퇴직한 <u>임원</u>	<u>④</u> 제2항 및 제3항
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	<u>임직원</u>
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	